보건복지부	보 도 참 고 자 료				
배 포 일	2019. 8. 23. / (총 6매)				
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	보험정책과	과 장	정 윤 순	전 화	044-202-2710
		담당자	유 미 란		044-202-2706
조산아 본인부담률 인하· 질병군 입원진료비 산정방법 개선,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	보험급여과	과 장	이 중 규	전 화	044-202-2730
		담당자	심 은 혜		044-202-2732
		담당자	주 철		044-202-2731
		담당자	이 선 식		044-202-2745
		담당자	이 동 우		044-202-2733
행정처분 감경 상한	보험평가과	과 장	이 수 연	전 화	044-202-2770
		담당자	김 우 석		044-202-2777
정신병원 등 2·3인실 본인부담률	예비급여과	과 장	손 영 래	전 화	044-202-2670
		담당자	문 달 해		044-202-2667
정신병원 등 2·3인실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제외	의료보장관리과	과 장	고 형 우	전 화	044-202-2680
		담당자	노 옥 균		044-202-2681

내년 1월부터 조산아,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!
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(8.23~10.2) -

- ▲조산아·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, ▲정신병원·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·3인실에 대한 본인부담률 등 규정, ▲사업장 건강보험 관련 신고 업무 위임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, ▲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등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-

□ **보건복지부**(장관 박능후)는 「**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**」 및 「**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**」 일부 개정안을 8월 23일(금)부터 10월 2일(수)까지 **입법예고**한다고 밝혔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

○ 개정안은 **조산아·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**을 **10%에서 5%**로 낮추고, **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·3인실**도 **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**하고,

○ **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**를 세무사 등에게 **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**는 **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**하는 한편,

○ 계좌 자동이체 외 **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**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**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**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**「국민건강보험법」**('19.4.23. 공포) **시행**('19.10.24)**에 필요한 세부 내용**을 담고 있다.

□ 이번 **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<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>

1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 경감

○ 조산아 및 저체중아*(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,500g 이하 등) 외래 진료 시 **5세**(60개월)**까지 본인부담률 5%** 적용(안 별표 2 제3호 하목)

* (기존)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% → (개정) 5세까지 본인부담률 5%

2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·3인실의 본인부담률 등을 병원 2·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(안 제19조제3항, 별표 2 제1호 및 제3호)

○ **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·3인실**에 대하여 **병원 2·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*을 적용**하고,

* 3인실은 100분의 30, 2인실은 100분의 40 (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는 미적용)

○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**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**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

3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에도 보험료 감액(법률 개정 후속 조치)

○ 계좌 자동이체 외 **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**(안 제45조의2)

*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매달 200원 감액

4 보험료 등 납입고지 시 일반우편 송달(법률 개정 후속 조치)

○ 건강보험료 등의 **납입고지·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** 등을 **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마련**(안 제47조의4)

5 기타 사항

○ **(질병군 입원진료비 산정방법 개선)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변경**(안 별표 2 제2호가목)

- **진료비 산출 시 고정비율*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**와 일당점수*****를 반영

*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 일수와는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('97년~)

** (기준점수) 평균 재원일수를 가진 입원환자의 건당 진료비 점수

*** (일당점수) 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한 재원일의 일당 진료비 점수

○ **(공단 및 심평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확대)** 신속한 체납처분, 산업재해 관련 **부당이득금 환수 등** 업무 수행에 필요한 **자료 요청 근거 마련**(안 별표4의3)

○ **(행정처분 감경 상한)** 처분 감경 시 **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/2 범위에서 감경**할 수 있도록 **상한 설정**(안 별표 5 제4호)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

<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>

1 "보장구(補裝具)"를 "보조기기"로 변경하고(법률 개정 후속 조치), 시각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등(안 26조, 별표 7 등)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서 사용되던 **'보장구' 용어**를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'보조기기법')」 제3조제2호에 따른 **'보조기기'로 변경**

- **장애인** 보조기기 **처방전 양식 유형별 세분화**(의지·보조기, 전동보조기기, 보청기 및 시각장애용보조기기 4개 서식)

○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**흰지팡이 급여기준액 인상**(14→25천 원), **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단축**(5년→3년), 기타 급여 절차 개선*

* 돋보기·망원경 급여 지급 신청 시 검수 확인서 제출 생략

2 건강보험 신고 업무 대행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

○ **건강보험 관련 신고사무를 세무사, 회계사 등에게 위임**한 사용자는 **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**(안 제4조의2, 별지 제9호의2서식)

<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>

1 치료재료 허가 범위 초과 사용 시 절차

○ **치료재료의 허가·신고** 또는 **인정된 사항**(효능·효과 및 사용방법)의 **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**에 관한 사항을 **전문평가위원회***에서 **검토**(안 제11조제8항)

*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의약계, 공단 및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중(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및 제11조 등)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

2 **2·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영수증 서식 변경**(안 별지 제6호, 제7호, 제8호, 제9호 서식)

□ 보건복지부는 **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**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.

○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9년 10월 2일(수)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**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.

○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(홈페이지)(www.mohw.go.kr) → 정보 → 법령 → "입법·행정예고 전자공청회"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< 의견 제출방법(우편) >

○ **제출처**
- 주소 : (3011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, 4층, 보건복지부 보험청책과
- FAX : (044) 202 - 3933

○ **기재사항**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의견)
- 성명(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통합입법예고시스템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

< 붙임 > 하위법령 개정 관련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주요 개정 사항

< 별첨 >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입법예고안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입법예고안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입법예고안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

붙임 **하위법령 개정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주요 개정 사항**

공포일	주요내용
국민건강보험법 (법률 제16366호, 2019.4.23. 공포)	○가입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. ○건강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납입고지,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 「국세기본법」상 서류 송달 규정을 준용하고, 우편송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○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(補裝具)를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'보조기기법')」 제3조제2호에 따른 '보조기기'로 변경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